

외국인투자기업 동반가족 체류 비자취득 절차 변경 안내

□ 주요 변경 내용

- 올해 3월 법무부는 체류지침을 구체화하여 한국에서 동반(F-3)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함. 이에 동반가족은 해외에서 동반(F-3)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함. 미준수 시, 해외 출국 후 재입국 필요

* 법무부 체류지침 개정('25.4.1일 시행)

참조: 하이코리아 → 정보광장 → 체류자격별안내메뉴얼

- 다만, 국내 입국 후 임신, 출산,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하다고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었을 때, 사증면제(B-1) 관광통과(B-2)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예외적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함.

* 공적서류 요건 : 동반(F-3) 비자의 제출 서류 중 본국의 공적 서류(예: 결혼증명서, 출생증명서)의 경우, ①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, ②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미체약국인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

□ 법무부 체류지침 개정(25.4.1 시행)

- 동반(F-3)비자는 '25.4.1부터 해외 대사관을 통해 사증 취득 필요

항 목	제도 변경 전	제도 변경 후
활동범위	동반가족	좌동
해당자	문화예술(D-1)부터 특정활동(E-7)까지, 거주(F-2), 재외동포(F-4) 및 방문취업(H-2)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	좌동
체류자격 변경허가	1.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(B-1), 관광통과(B-2),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반(F-3)자격으로 변경허가	1. 국내 입국 후 임신·출산·질병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① 사증면제(B-1), 관광통과(B-2)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